

#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심사분석사례

금융정보분석원

2007. 11. 28.





# 1. 금융기관 혐의거래 [STR] 보고

## 거래 내용

- ◆ 20\*\*년 신원미상의 30대 여성이 한국 △ △ 은행 ○ ○ 지점에 타인계좌 3개를 소지하고 내점하여 총 5천2백만원 출금
  - ✓ LU ○ ○ △ △ 은행 계좌 ⇨ 1천4백만원 인출
  - ✓ ZH ○ ○ △ △ 은행 계좌 ⇨ 1천9백만원 인출
  - ✓ 이 ○ ○ △ △ 은행 계좌 ⇨ 1천9백만원 인출

## 의심 사유

- 고객의 현금출금 사유에 대해 “컨테이너 구입자금”이라는 막연한 답변
- 중국 교포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여성이 타인 계좌 3개를 지참하고 고객의 현금을 인출함





# 2. FIU 심사분석

## 혐의업체 자금세탁 흐름도





## 2. FIU 심사분석

### 분석결과

#### 관세청 제공

#### 제공 판단 근거

- ▶ 환치기계좌 입출금 규모가 25억원 상당으로 고액
- ▶ 대중국 무역업체 등이 단기간에 거액을 입금
- ▶ 밀수입대금, 수출입가격조작에 따른 차액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

#### 전제범죄 내 용

- ▶ 관세법 제269조(밀수출입죄)
- ▶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관세법 제270조(관세포탈죄 등)
- ▶ 대외무역법 제40조(수출입물품의 가격조작 금지)



# 3. 법집행기관 수사결과

**관세포탈 및 불법지급**

- 피의자: 임○○, C코리아(주)

**관세포탈 및 불법지급**

- 피의자: 김○○, (주)M랜드

**관세법 위반 등**

**수사  
결과**

**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**

- 피의자 : 이 ○○

**외국환거래법위반**

**지급방법 위반[불법지급]**

- 피의자 : 허 ○○

2006년도 FIU 제공에 의한 관세청 환치기 사범 **23건, 1조 590억원** 검거  
[관세청 전체 검거실적의 70%차지]